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0. 27 선고 2020가단2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영농조합법인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변론 종결2020. 10. 13.

판결 선고2020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,065,240원 및 그 중 79,191,412원에 대하여 2019. 12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C영농조합법인, D, E, F, G, H, J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3. 피고 I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형원

별지